

의안번호	2219461
의 퇴 인	안상훈의원
회 답 일	2026. 8. 20.
추계번호	26C30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83조의11(소비자 교육 및 홍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광고, <u>배출·수거</u>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83조의13 신설(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 실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폐기를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유통기한의 경과,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의 수거,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신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 개설자의 선정 기준·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3조의11(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3조의13 신설(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 실시 등)	

2. 상세 사유¹⁾

□ 폐의약품 배출·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안 제83조의11제1항)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약품의 배출·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경우, 그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 제83조의11제3항은 그 내용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교육 및 홍보의 내용과 방법, 그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 실시 등(안 제83조의13 신설)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의 수거,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므로,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배출·수거 단계의 의약품은 폐의약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담당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중앙 부처 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예산은 편성된 바 없음.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에서 ‘폐의약품 수거, 운반, 처리, 홍보 등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또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없다고 함.

*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소임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소임	02-6788-4742	soimlee@nabo.go.kr